Basic

ESG POLICY UPDATE

17-11-2
DATE 2017.11.22.
자료문의 ESG 분석2팀 책임투자파트
담당자 방문옥 선임연구원 (moonoki@cgs.or.kr)
박성식 연구원 (sspark0716@cgs.or.kr)

본회의 통과

1.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2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최근 발의된 ESG 관련 법령 2건

[본회의 통과] 1.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주요내용

○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○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5년마다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시 서류검토 외에 현장 실사를 한 후에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,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정함

○ 유해성이 높은 화학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(환경부령)으로 하여금 5년마다 “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”를 제출하도록 함

○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영업비밀로 비공개 요청이 있어 인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기대함

○ 기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생략

시사점

○ 불산 누출,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, 환경부 장관의 현장 실사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
○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의 화학물질 배출에 민감하므로,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

[본회의 통과] 2.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주요내용

○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 업무를 추가함

○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*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※ 동반성장지수
-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
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1년부터 매년 공표
-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600사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지수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(2016년 155개)
-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“최우수, 우수, 양호, 보통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표함

최근 발의된 ESG 관련 법령

이 섹션은 최근 발의된 ESG 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발의된 제·개정 의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불확실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, 국회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>

주요 발의 내용

-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,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함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종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, 환경 개선, 상표,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- 하도급업체, 유통납품업체, 가맹점, 대리점 등 거래의 지위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, 대규모유통업자, 가맹본부 등과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- 단,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하며,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

<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, 국회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>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발의 내용

-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, 회사가 이익을 투자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 과도하게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함
-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함
-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, 배당수익, 임대료,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 그 합산액의 10%를 “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”로 하여 기존 법인세액에 더하여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

※ 취지가 유사한 “기업소득환류세제”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, 2017년에 대한 과세 이후 종료될 예정임